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검·병무청
공보관 김희경(검찰) / 이아륜(병무청)
전화 02-3219-4420 / 042-481-2701

보 도 자 료
2023. 1. 26.(목)

제 목

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중간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·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2022. 12. 5.부터 『병역면탈 합동수사팀』을 구성하여,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와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브로커 등을 수사 중임
- 병역브로커 K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수사팀은 오늘(1. 26.)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면탈을 유도한 **또다른 병역브로커 A (2023. 1. 9. 구속), 의사·프로게이머(코치)·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, 병역의무자의 부모나 지인 등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음**
 - 브로커 A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여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“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”라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 원 수수
 - 병역의무자들은 A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하여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, 약물처방,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을 감면받음
 - 병역면탈자를 도운 가족 내지 지인 중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 체결, 대가 지급, 허위 목격자·보호자 행세 등을 통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병역의무자와 함께 공범으로 입건 및 기소
- ▶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병역법위반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(병력 및 병무 관련 병적기록 등)까지 추가로 의율하여 범행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함
- 병역브로커 K와 A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며,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 예정

I 주요 피고인, 공소사실 요지

1 주요 피고인

- 병역브로커 A(행정사, 37세)
- 병역면탈자 B(의사, 30세), C(프로게이머 코치, 26세), D(골프선수, 25세) 등 15명
- 기타 공범 6명(범행 적극 가담자)

2 공소사실 요지 [기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K의 공소사실 포함]

순번	피고인		공소사실	죄명	처분
1	브로커	A	'20. 5. ~ '22. 11. 경 (K는 '20. 2. ~ '22. 10. 경)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하여,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여 위계로 병역을 감면받고, 병무시스템기록에 병명(病名) 및 병역 의무와 관련된 불실사실이 기재되도록 함	· 병역법위반 · 위계공집방 ·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·행사	'23. 1. 9. 구속 '23. 1. 26. 구속기소
		(K) *기 구속기소			'22. 12. 21. 구속기소
2~16	면탈자	B, C, D 등 15명	위와 같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,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음	· 병역법위반 · 위계공집방	'23. 1. 26. 각 불구속기소
17~22	기타 공범	6명	위와 같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, 브로커 계약, 대가 지급, 발작 목격자 행세 등을 통해 병무청을 속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받도록 함	· 병역법위반 · 위계공집방	'23. 1. 26. 각 불구속기소

II

수사 경과

- '22. 12. 5. 서울남부지검·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구성
- '22. 12. 21. 브로커 K 구속기소(7명 면탈 혐의, 11. 25. 구속)
- '22. 12. 29.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팀 확대 개편
- '23. 1. 9. 브로커 A 구속(10명 면탈 혐의)
- '23. 1. 26. 브로커 A, 면탈자 B 등 15명, 기타 공범 6명 등 총 22명 기소

※ 병역브로커 K와 A 및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여죄 수사 계속 진행 중(추후 추가 기소 예정)

III

수사 결과

1 병역면탈 유형

- 뇌전증을 빙자한 병역면탈 사례로는 크게 (1) 병역미처분자의 병역감면 시도와 (2) 병역처분자의 병역감면 시도로 나눌 수 있음
- 본건 기소 대상자들은 (2)에 해당하며, ① 병역의무이행자(보충역 근무 중인 사회복지무요원 등), ② 입영연기 중인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에 '병역처분변경 신청'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서, 허위의 뇌전증 병무용 진단서,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례임

□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이 확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
▲ 1~3급은 현역(입영 대상), ▲ 4급은 보충역, ▲ 5급은 전시근로역(군복무 면제), ▲ 6급은 병역면제, ▲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게 됨

2 범행 배경 및 방법

가. 범행 배경 : 뇌전증 의료진단과 병역판정의 어려움

- 뇌전증은 뇌 구조 문제, 대사성 질환,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, 뇌파검사, MRI 검사가 정상이라도 뇌전증일 수 있고, 검사에서 뇌파 이상이 나오더라도 뇌전증이 아닐 수 있음

☞ 뇌전증의 특성상 뇌파검사 등에서의 뇌파 이상 발견과 별개로 병역 면탈자가 관련 증상을 연구하고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를 한 경우 전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음

※ 대한뇌전증학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 참조

나. 범행 방법 : 뇌전증 사각지대를 악용한 철저한 시나리오와 역할분담

- 브로커는 의료기술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병역의무자의 유형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, 병역의무자 등과 병역판정 전후에 걸쳐 환자, 보호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 실행

- ① **고객 유인** 브로커 A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여 병역의무자를 유인하고, ② **정형 계약** '뇌전증 5급 미판정시 보수 전액 환불'을 자필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고, 금품수수(총 2억 610만 원)

- ③ **시나리오** 병역면탈자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에 거짓 뇌전증 증상을 설명할 맞춤형 허위 시나리오를 제공*하고, ④ **공범 가담 사주** 허위 119신고나 목격자 진술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함

* 빨리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 병역면탈자에게는 허위 119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하고,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들은 1, 2차 병원 진료를 거치게 함

- ⑤ **허위 진단서 제출**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, 진료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고, ⑥ **신체검사 위한 관리** 진료기록 작출을 위해 지속적 허위 수진,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 복용 등 전반을 관리

IV

참고 사항

- (면탈자 특이사항) 기소 대상 면탈자 중에는 의사(공중보건의), 프로그래머(코치), 골프선수 등 전문직도 포함(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병역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,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까지 엄중히 수사하여 기소)
 - ※ 최근 법정 자백한 브로커 K 관련 병역면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한 브로커 A 관련 면탈자 등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불구속기소(브로커 K 관련 면탈자 수사는 계속 중)
- (범행 적극가담 공범기소) 단순 방조를 넘어 병역면탈을 위해서 직접 브로커와 계약 체결, 대가 지급, 허위 목격자·보호자 행세 등을 통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가족 내지 지인은 병역법위반 등의 공범(공모공동정범)으로 기소함
 - ※ 공정한 병역의무 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 필요(다만, 입건 및 기소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과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고려)
- (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령적용) 병역법위반으로만 의율한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철저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행사까지 추가로 의율
 - ※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의율한 선례는 적으나, 대법원은 병역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동시에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시(2012도15908 등)
 - ※ 불실기재죄를 의율한 선례는 없으나, 질병과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기록은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록이므로 부실한 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병역면탈 못지 않은 중한 범죄로서 엄정한 법집행 필요
 - ▶ 불실기재죄는 범죄수익환수법 개정 전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'중대범죄'에 해당하여 개정법 시행(22. 1. 4.) 전 범행에 대해서도 실효적 법집행 가능(23. 1. 25. 기소 전 추정보전청구 필)
- (향후 수사계획)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실체를 규명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할 것임☑